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2
----------	-----

제출일자 : 2010. 3. 5.

제 출 자 : 윤호영 의원 외 3명

1. 개정이유

최첨단의 I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명소를 찾기 쉽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전화부스 신설
- 구정정보안내 광고물(전자게시시설 포함) 신설
-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나. 예산조치 : 추후조치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2호를 5호로 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중전화부스(다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 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여야 한다.)
3. 구정정보안내 광고물(전자게시시설 포함)
4.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

제12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정비·개정한다.

“~에 관하여” 를 “~는, ~를, ~에” 등으로 순화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등으로 순화

“~에 의한” 를 “에 따른” 등으로 순화

“~에 대한” 를 “~에” 등으로 순화

“~에 있어” 를 “~에서, ~하는 경우” 등으로 순화

“내지” 를 “~부터, ~까지의 규정, ~이상, ~이하” 등으로 순화

“한하여” 를 “~에만” 등으로 순화

“~으로부터” 를 “~부터” 등으로 순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규정에 따라, ~에 따라” 로, “~에 대하여는” 를 “~에는” 로,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의 규정에 의한다” 를 “~의 규정에 따른다” 로, “~의 규정에 의한” 를 “~의 규정에 따른” 으로 개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 ----- -----그 시행에 ----- -----.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당해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항 제2호에 의한 ----- ----- 각 호와 ----- ----- 영 제31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 -----.
2. 영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중 세로길이가 3미터이하인 간판	2. ---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 간판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판류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
4.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 -----

현행	개정안
5.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 -----
6.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 -----
②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항 제1호에 따른 ----- ----- 각호와 -----.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3. -----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④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 -----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1. 제24조에 따른 ----- -----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서류	2. -----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제3조(생략)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현행과 같음) -----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 ----- 별표 1에 따른 ----- ----- 천공하여서 ----- -----.

현 행	개 정 안
<p>② 영 제9조제5항의 <u>규정에 의하여</u> 허가 대상 광고물 등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u>신고함으로써</u>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u>의한</u> 원색사진과 변경되는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도안은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생략) 영 제11조제9호의 <u>규정에 의한</u>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은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p> <p>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u>규정에 의하여</u>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표시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p> <p>제9조(생략) 영 제13조제10항의 <u>규정에 의한</u>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사항은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p> <p>1. 연막·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 <u>하여서는</u> 아니 된다.</p> <p>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 <u>하여서는</u> 아니 된다.</p>	<p>② 영 제9조제5항에 <u>따라</u> ----- ----- <u>각 호에</u> ----- ----- ----- 신고<u>하여</u> ----- ----- 제7조제1항제1호에 <u>따른</u> ----- ----- -----</p> <p>제7조(현행과 같음) 영 제11조제9호에 <u>따른</u> ----- ----- <u>각 호와</u> -----.</p> <p>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영 제12조에 <u>따라</u> ----- ----- ----- 제2항에 <u>따른</u> ----- -----.</p> <p>②제1항에 <u>따라</u> ----- ----- ----- <u>각 호와</u> -----.</p> <p>제9조(현행과 같음) 영 제13조제10항에 <u>따른</u> ----- ----- ----- <u>각 호와</u> -----.</p> <p>1. ----- 표시 <u>해서는</u> -----.</p> <p>2. ----- ----- 표시 <u>해서는</u> -----.</p>

현행	개정안
<p>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생략)</p> <p>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생략)</p> <p>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각 건물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p> <p>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p>	<p>3. ----- ----- ----- 제20조에 따라 ----- -----.</p> <p>제10조(현행과 같음)</p> <p>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 옥상간판부터 -----.</p> <p>③----- ----- ----- 제5항에 따라 ----- -----.</p> <p>제11조(현행과 같음)</p> <p>①----- -----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 -----.</p> <p>1. ----- ----- 끝부분부터 ----- -----</p> <p>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 ----- ----- 고정부분부터 ----- -----.</p>

현 행	개 정 안
<p>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 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삭 제></p>
<p>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3조(생략)</p> <p>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현행과 같음)</p> <p>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 ----- ----- ----- -----.</p>
<p>4.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p>	<p>4. -----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 산정하는 경우 ----- -----.</p>
<p>②(생략)</p> <p>3. 당해 업소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4.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의 경우에도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방식 사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3. ----- 영업시간에만 ----- -----.</p> <p>4. -----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 -----.</p>
<p>④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 4분의 1이내에만 해당한다) · ----- 상징도형에만 ----- ----- 제2항에 따른 ----- -----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 -----.</p>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생략) 영 제30조의2의 <u>규정에 의하여</u>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현행과 같음) 영 제30조의2에 <u>따라</u> ----- -----.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1조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 ----- ----- ----- ----- ----- ----- 영 제31조에 <u>따라</u> ----- 사용 <u>해서는</u> -----.
2. 영 제15조제3호 <u>내지</u> 제4호의 <u>규정에 의한</u>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 측면 또는 후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u>한하여</u>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로서 최대 20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하단은 <u>지면으로부터</u>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제3호 <u>부터</u> 제4호 <u>까지의 규정</u> <u>에 따른</u> ----- ----- -----도형에 <u>만</u> ----- ----- ----- ----- <u>지면부터</u> ----- -----.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u>벽면으로부터</u> 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 벽면 <u>부터</u> -----.
제15조(생략) ①영 제30조의2의 <u>규정에 의한</u>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현행과 같음) ①영 제30조의2에 <u>따른</u> ----- ----- -----.

현 행	개 정 안
<p>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이나 당해 건물부지 내에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에 <u>한하여</u> 표시하여야 한다.</p>	<p>1. ----- ----- -----내용에<u>만</u> -----.</p>
<p>2. 공연간판은 1업소에 벽면이용간판과 지주이용중 하나만을 표시하되(제2항제3호의 게시판은 제외한다), 영 제13조제7항의 <u>규정에 의한</u> 1업소 광고물 등의 총 수량을 산정<u>함에 있어</u>,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u>규정에 의한</u> 공연간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 ----- 영 제13조제7항에 <u>따</u> <u>른</u> ----- 산정<u>하</u> <u>는 경우</u>, -----, 제3항에 <u>따른</u>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4. 간판과 게시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고, 지면<u>으로부터</u>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p>	<p>4. ----- -----, 지면<u>부터</u> ----- -----.</p>
<p>③(생략).</p>	<p>③(현행과 같음)</p>
<p>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u>으로부터</u> 4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2. -----지면<u>부터</u> ----- ----- -----.</p>
<p>3. 조명을 <u>함에 있어서는</u>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점멸하거나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u>하여서는</u> 아니 된다.</p>	<p>3. 조명을 <u>하는 경우에는</u> ----- ----- 사용<u>해서는</u> 아니 된다.</p>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u>규정에 의하여</u>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에 <u>따라</u> ----- -----.
1. 제3조의 <u>규정에 의하여</u>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7조의 <u>규정에 의하여</u>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u>한하여</u>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7항의 <u>규정에 의한</u>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 <u>함에 있어서</u>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3조 <u>에 따라</u> ----- ----- -----제17조 <u>에 따라</u> ----- -----지정게시대에 <u>만</u> ----- -----, 영 제13조제7항 <u>에 따른</u> ----- -----산정하는 경우, ----- -----.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u>한하여</u>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u>규정에 의하여</u>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 행사내용에 <u>만</u> 표시할 수 있다. ----- 제17조 <u>에 따라</u> ----- -----.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 방식의 조명을 <u>하여서는</u> 아니 되며,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 장치를 <u>하여서는</u> 아니 된다.	5. ----- ----- 조명을 <u>해서는</u> -----, ----- ----- 보조 장치를 <u>해서는</u> 아니 된다.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u>의하여</u>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 ----- 「유통산업발전법」에 <u>따라</u> ----- -----.
2.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 <u>하여서는</u> 아니 된다.	2. ----- ----- ----- ----- 초과 <u>해서는</u>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p>③(생략)</p> <p>1. 제4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1. 제4항에 <u>따라</u> ----- ----- -----.</p>
<p>④(생략)</p> <p>1. 지주 및 현수막 게시물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u>지면으로부터</u>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3. 영 제20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u>함에 있어서는</u>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p> <p>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u>하여서는</u> 아니 된다.</p>	<p>④(현행과 같음)</p> <p>1. ----- 지면 <u>부터</u> ----- -----.</p> <p>3. 영 제20조제1항에 <u>따른</u> ----- ----- 산정 <u>하는 경우</u> -----.</p> <p>4. ----- 설치 <u>해서는</u> 아니 된다.</p>
<p>⑤제17조의 <u>규정에 의한</u>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1. 현수막의 가로 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 폭(게시물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 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u>규정에 의하여</u>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u>의한다</u>.</p>	<p>⑤제17조 <u>에 따른</u> ----- -----.</p> <p>1. ----- 단서 <u>에 따라</u> ----- ----- 그 규격 <u>에 따른다</u>.</p>

현행	개정안
<p>제17조(생략)</p> <p>①(생략)</p> <p>2.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세로 7.5미터 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p> <p>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구청장은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8조(생략)</p> <p>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벽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현행과 같음)</p> <p>①(현행과 같음)</p> <p>2. ----- 지면부터 -----</p> <p>----- 터 -----</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제1항에 따라 -----</p> <p>-----</p> <p>-----</p> <p>1. -----</p> <p>-----</p> <p>----- 게시하게 해서는 -----</p> <p>3.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p> <p>----- 현수막은 -----</p> <p>-----영 제40조의2에 따라 -----</p> <p>-----</p> <p>제18조(현행과 같음)</p> <p>①영 제30조의2에 따라 -----</p> <p>-----</p> <p>-----</p> <p>1. 제3조에 따라 -----</p> <p>----- 제2항에 따라 -----</p> <p>-----</p>

현행	개정안
제19조(생략)	제19조(현행과 같음)
①구청장은 제17조의 <u>규정에 의한</u>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8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7조 <u>에 따른</u> ----- ----- 제18조제2항 <u>에 따른</u> ----- -----단체·법인 등 <u>이</u> ----- -----.
②구청장은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u>에 따라</u> ----- ----- ----- ----- -----.
③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 <u>에 의하여</u>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u>에 따른</u> ----- ----- ----- 제2호서식 <u>에 따라</u> ----- -----.
④구청장은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시설물의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u>에 따른</u> ----- ----- -----.
⑤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제1항 <u>에 따른</u> ----- -----.
⑦제1항 <u>에 의하여</u> 위탁받은 자는 위탁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폐·계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 <u>에 따라</u> ----- ----- ----- -----.
제20조(생략)	제20조(현행과 같음)
영 제30조의2의 <u>규정에 의하여</u>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의2 <u>에 따라</u> ----- -----.

현행	개정안
<p>제23조(생략)</p> <p>①영 제33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제24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심의대상 광고물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u>의한</u> 심의 신청서와 위원회에서 정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u>한하여</u>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영 제33조제5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구성에 <u>관하여는</u>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p> <p>⑥기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u>관하여는</u> 법 제7조, 영 제33조 제1항 <u>내지</u> 제4항, 제34조 <u>내지</u>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현행과 같음)</p> <p>①영 제33조제2항에 <u>따른</u> ----- ----- -----.</p> <p>③제24조제1항에 <u>따른</u> ----- ----- 제4호서식에 <u>따라</u> ----- ----- ----- ----- ----- ----- ----- ----- ----- <u>한정하여</u> -----.</p> <p>⑤영 제33조제5항에 <u>따라</u> ----- -----그 구성은 ----- -----.</p> <p>⑥----- ----- 설치운영은 ----- 법 제7조, 영 제33조제1항<u>부터</u> 제4항<u>까지</u>, 제34조<u>부</u> <u>터</u> 제36조<u>까지의</u> 규정을 -----.</p>
<p>제24조(생략)</p> <p>①(생략)</p> <p>1. 법령의 <u>규정에 의한</u> 사항과 이 조례에 <u>의하</u> <u>여</u>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p>	<p>제24조(현행과 같음)</p> <p>①(현행과 같음).</p> <p>1. 법령에 <u>따른</u> ----- 이 조례 <u>에 따라</u> -----</p>

현 행	개 정 안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	아. 영 제31조제3항·제4항에 따른 ---- ----- ----- -----
3. 생략 ②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심의대상 의 위임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위임 등은 ---- -----.
제25조(생략) ①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제25조(현행과 같음) ①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 -----.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 수막 게시시설 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 ----- -----
2.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 내지 제4 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2. ----- 영 제3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 ----- -----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 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형간 판	3. ----- ----- 지면부터 ---- ----- -----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 ----- -----

현 행	개 정 안
<p>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안전도 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검사서에 따라 ----- ----- 서식에 따라 ----- ----- 제26조에 따라 ----- -----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 ----- 서식에 따른 ----- ----- 서식에 따른 ----- -----.</p>
<p>③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영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 ----- 광고물 등은 ----- -----.</p>
<p>제26조(생략)</p> <p>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제26조(현행과 같음)</p> <p>①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 ----- 각 호와 ----- -----.</p>
<p>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p>	<p>1. 「건축사법」에 따라 ----- -----</p>
<p>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p>	<p>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p>
<p>②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 -----.</p>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생략) 법 제10조제3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후 「행정대집행법」의 <u>규정에 의하여</u>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현행과 같음) 법 제10조제3항에 <u>따라</u> ----- ----- ----- 「행정대집행법」에 <u>따라</u> ----- -----.
제28조(생략)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 등 또는 표시 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현행과 같음) ①----- ----- 영 제40조의2제1항에 <u>따라</u> ----- ----- -----.
②영 제40조의2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40조의2제2항에 <u>따라</u> ----- -----.
③구청장은 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u>의하여</u>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u>따라</u> ----- ----- 제9호서식에 <u>따라</u> ----- -----.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보관한 광고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u>의한다</u> .	④----- 영 제40조의3제1항에 <u>따라</u> ----- ----- 별지 제10호서식에 <u>따른다</u> .
제29조(생략)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u>규정에 의한</u>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현행과 같음) ①----- ----- 제3항에 <u>따라</u> ----- ----- 영 제41조제4항에 <u>따른</u> ----- -----.

현행	개정안
<p>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 ----- ----- -----.</p>
<p>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41조에 따라 ----- ----- ----- ----- -----.</p>
<p>④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 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p>	<p>④ ----- 영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p>
<p>제30조(생략)</p> <p>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30조(현행과 같음)</p> <p>① 영 제42조에 따른 ----- ----- ----- ----- -----.</p>
<p>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 ----- ----- 자에게는 ----- ----- -----.</p>

현행	개정안
<p>⑤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⑤----- 자<u>에게는</u> ----- ----- 제14호서식<u>에 따라</u> ----- ----- -----.</p>
<p>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 ----- ----- 법 제20조제2항<u>에 따른</u> ----- -----.</p>
<p>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p> <p>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p>	<p>2. 법률<u>에 따라</u> -----</p> <p>3. ----- 「민방위기본법」<u>에 따라</u> -----</p>
<p>제31조(생략)</p>	<p>제31조(현행과 같음)</p>
<p>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u>에 따라</u> ---- ----- ----- ----- ----- ----- ----- -----.</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u>에 따라</u> ----- ----- ----- ----- -----.</p>

